

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※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상호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	
	사업자등록번호		
	전자우편주소		
신청내용	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		
	재발급 사유(별첨 가능)		

「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명서(혈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)	수수료 1만5천원
------	---	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	→	접수	→	검토	→	기안·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증발급
신청인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